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10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660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1055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박혜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안나, 전상희, 성창훈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화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3.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의 2021. 6. 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6. 9. 접수 E로 마친 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와 D 사이의 2022. 3.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안양시 차량등록사업소 2022. 3. 28. 접수 F G, H로 마친 각 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및 피고 B 명의로 운영하던 'I'에서 영상 촬영, 편집, 작가로 근무하였다. D은 원고에게서 수시로 돈을 빌리고 일부 변제하여 왔고, 2020. 10. 말경 폐업하면서 'I' 자산의 절반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2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 B와 피고 C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각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D에게 'I' 자산 절반을 청구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 D이 별지 1, 2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 D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각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소장에 갑 제1 내지 6호증을 첨부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서증 제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D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 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제 원 관 리 번 호 : A01-1-00060-0007-1315
차 명 : K7
차 종 : 승용 대형
차 대 번 호 : J
원 동 기 형 식 : D4HB
최 초 등 록 일 : 2016. 4. 28.
최 종 소 유 자 : B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 (차량번호 2 생략)
제 원 관 리 번 호 : 042-2-00001-0017-1315
차 명 : 디스커버리4 3.0D
차 종 : 승용 대형
차 대 번 호 : K
원 동 기 형 식 : 306DT
최 초 등 록 일 : 2015. 11. 05.
최 종 소 유 자 : C
2. 자동차 등록번호 : (차량번호 3 생략)
제 원 관 리 번 호 : A08-1-00074-0088-3108
차 명 :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차 종 : 화물 소형
차 대 번 호 : L
원 동 기 형 식 : D4CB
최 초 등 록 일 : 2008. 06. 27.
최 종 소 유 자 : C
3. 자동차 등록번호 : (차량번호 4 생략)
제 원 관 리 번 호 : B04-1-00027-0000-4204
차 명 : 신광이동검진차

차 종 : 특수 중형
차 대 번 호 : M
원 동 기 형 식 : D6DA
최 초 등 록 일 : 2004. 4. 29.
최 종 소 유 자 : C

